

# MLC 운영조건 협약서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CJ"라 한다)과 XXXX(이하 "협력사"라 한다)은 양 당사자간 체결한 위탁판매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Mobile Live Commerce(이하 "MLC"라 한다)를 통한 위탁판매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MLC" 운영 조건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에 따른다.

## 제 1 조 [협력사 정보]

|      |  |       |  |      |  |
|------|--|-------|--|------|--|
| 협력사명 |  | 협력사코드 |  | 판매매체 |  |
|------|--|-------|--|------|--|

## 제 2 조 [MLC 운영 시간]

|      |  |       |  |
|------|--|-------|--|
| 운영일시 |  | 프로그램명 |  |
|------|--|-------|--|

- ① "MLC" 운영일시는 판매상품이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로서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판매 상품은 복수일 수 있다.
- ② 동일 시간 내에 2 개 이상의 협력사가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 시간을 업체수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어 할당하며 운영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③ "MLC" 운영 중 판매 효율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당된 운영 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거래 조건]

| 번호            | 판매 코드 | 판매상 품명 | 판매가( 원) | 판매위탁 수량 | 매입 방법 | 배송 주체 | 정액수수료( 만원) | 정률수수료        | 임의반품 기간 |
|---------------|-------|--------|---------|---------|-------|-------|------------|--------------|---------|
|               |       |        |         |         |       |       |            | MLC 수수료율 (%) |         |
| [[ITEM_LIST]] |       |        |         |         |       |       |            |              |         |

<정률수수료는 VAT 포함, 정액수수료는 VAT 별도임>

- ① 본 "협약서"에서 수수료(정액수수료, 정률수수료 모두 포함)는 "협력사"가 "CJ"에게 위탁판매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의미한다.
- ② 본 협약서에서 정률수수료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되, "MLC" 운영 관련 수수료는 본 "MLC" 운영에서 고지하는 주문번호를 통해 주문한 총 판매액에 적용한다.
- ③ 판매수량은 협력사가 상품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파트너시스템 등)에 입력한 내용에 따른다.
- ④ "MLC" 운영제작비는 "CJ"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설명자료(VCR, 손판넬 등)등을 사용할 것을 "CJ"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CJ"는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샘플을 수령한 경우 샘플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소모성 상품의 경우에는 "CJ"가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예정가 또는 동종 유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가로 한다.

-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목적 및 "MLC" 프로그램 시연 목적으로 "CJ"의 요청 시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판매 상품의 샘플을 제공한다.

#### 제 4 조 [프로모션]

| 번호 | 유형 | 상품코드 | 상품명 | 분담 내역 및 비율 |
|----|----|------|-----|------------|
|    |    |      |     |            |

- ① 본 조의 프로모션은 "MLC"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MLC" 운영시간 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발생 시 양 당사자간 합의 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프로모션은 상품 판매 시 마다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예상 비용 및 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에 동의하며 다만, 그 분담비율은 "CJ"와 "협력사"에게 예상되는 경제상 이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협력사"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사의 비용부담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초과분은 "CJ"가 부담한다.
- ④ 본 조 3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본 조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본 조의 프로모션은 매출증대를 위해 "CJ"와 "협력사"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는 건으로, 분담내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CJ"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 제 5 조 [협력사의 전문 보조인력 사용]

- ① 게스트, 모델, 방청객, 기타 보조인력 등 "MLC" 제작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CJ"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CJ"가 전액 부담한다.
- ②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협력사"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전문 보조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보조인력 수, 업무내용, 분담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약정하여야 한다

| 번호 | 유형        |       | 인력(명) | 업무내용                            | CJ(%) | 협력사(%)      | 비고                   |
|----|-----------|-------|-------|---------------------------------|-------|-------------|----------------------|
| 1  | 게스트       | 연예인   |       | MLC<br>특수판매기법등<br>전문적인 상품<br>설명 |       | [협력사분담]     | <input type="text"/> |
|    |           | 판매전문가 |       |                                 |       |             |                      |
|    |           | 협력사대표 |       |                                 |       |             |                      |
|    |           | 협력사직원 |       |                                 |       |             |                      |
| 2  | 기타 전문보조인력 |       |       | 전문적인<br>상품관리업무                  |       | [협력사<br>분담] | <input type="text"/> |

- ③ "협력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인력이 본 조 2 항의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CJ"는 "협력사"가 보조인력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용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한 서면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파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협력사" 보조인력의 근무기간 및 시간은 제 2 조 "MLC"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6 조 [법규 준수]

양 당사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MLC"운영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7 조 [MLC 운영시간의 변경 등]

- ① 본 계약에 따라 “MLC” 판매가 예정된 판매상품 또는 “협력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J”는 제 2 조에서 정한 “MLC” 운영일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예정상품에 대해 제 3 자가 자신의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 담보권 등의 법적 권리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2. 판매예정상품의 품질, 위해성 등에 관하여 언론보도되거나 소비자단체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판매예정상품의 품질, 위해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협력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해 행정법규 위반 및 형사책임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의심되는 경우
  4. “협력사”에 대하여 중대한 채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력사”가 폐업,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② “협력사”가 제 1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적극 소명하는 경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 조에 정한 본래의 “MLC”운영일시에 “MLC”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8 조 [특약사항]

“CJ”와 “협력사”는 본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각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음에 동의한다. 단, 본 협약서의 각 조건이 상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경우 “협력사”는 본 협약서를 반려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20XX 년 XX 월 XX 일

“CJ”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대표이사 윤 상 현 (인)

“협력사”

(인)